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부형분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3. 8. (금요일), 14:00~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임돈희, 김말애, 김삼대자, 김재영, 나선화
박진태, 인묵, 정영환, 최성자, 최태현, 황루시
(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5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6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인정	공개
7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인정	공개
8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인정	공개
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공개
10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및 공동등재 심사대상 종목 선정	공개
11	2012년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 선정	공개
12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지정 협의	공개

【검토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2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3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공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 기능 검증결과 검토	공개

【보고사항】

1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 조사 관련 소위원회 결과	공개
---	---	----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3-02-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3.1.11.)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보유자 이근화선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
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3.1.17~)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 지정일 : 1967.3.31.
-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이근화선(사당춤, '70.7.18 인정)
 - 전수교육조교(5명) : 동선본(악사 '96.5.1 선정)
동선백(사자앞채·북, '01.11.30 선정)
동영범(사자앞채·사자뒷채, '01.11.30 선정)
박균일(꼭쇠·사채앞채, '01.11.30 선정)
강선윤(꼭추춤, '01.11.30 선정)
 - 보유단체 : 북청사자놀이보존회('86.11.1 인정/ 대표자 이근화선)

(2) 확인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이근화선
- 일 시 : 2012. 10. 24.
- 장 소 : 보유자 자택(경기도 남양주시)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3) 조사결과

조사자	검토의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능(사당거사춤)에 대한 실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실연 여부와 그 실연의 온전성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애매한 경우에 해당됨. ○ 지난 3년간 공개행사의 경우처럼 어느 해는 괜찮았다 어느 해는 많이 기력이 쇠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명예보유자 전환을 통해 보존회의 지속적 전승구조를 미리 구축함이 옳다고 사료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행사 시 보유자가 자기배역(사당거사춤)을 실연하지 않아 명예보유자로 전환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런 것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음. ○ 현지조사 시 재실연을 통해 보유 배역인 사당춤과 그동안 해왔던 녀두리춤을 보여주었음. 고령에도 불구하고 공연에 참여하여 춤을 출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당일 실연에서 보유자는 고령으로 인해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고 춤의 멋을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발견할 수 있음.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황에서 보유자가 인정받은 예능의 실현은 사실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음. 최근 3년 동안 이근화선이 인정받은 예능을 공개행사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지적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인정 예능 수행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 다만, 보유자가 고령인 점에서 판단이 쉽지 않음.

(4)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모니터링 주요내용

- 2010년 :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녀두리춤으로 직접 공개행사 참여
- 2011년 :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애원성춤과 녀두리춤 부분 실연에 참여
- 2012년 : 녀두리춤을 실연, 작년에 비해 기력이 쇠함

(5) 예고사항(관보 제17932호/2013.1.17/문화재청 공고 제2013-13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명예보유자	이근화선 (李根花善)	여	1924.4.23.	사당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청구(아) 103-706

○ 인정예고 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보유자 이근화선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임.

(6)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이근화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3.1.11.)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김실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3.1.17~)하고, 명예보유자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 지정일 : 1970. 7. 22.
- 전승자현황
 - 보유자(3명) : 김실자(둘째양반·마부, '82.6.1 인정)
김정순(상좌·용산삼개집, '82.6.1 인정)
송용태(취발이, '02.2.5 인정)
 - 전수교육조교(5명) : 김정숙(미알할미, '84.12.1 선정)
정영미(소무, '01.11.30 선정)
백은실(미알할미, '01.11.30 선정)
옥용준(말뚝이, '01.11.30 선정)
김원직(노승, '01.11.30 선정)
 - 보유단체 : 강령탈춤보존회('86.11.1 인정/ 대표자 김정순)

(2) 확인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김실자
- 일 시 : 2012. 10. 16.
- 장 소 : 보유자 자택(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3) 조사결과

조사자	검토의견
A	○ 현지조사 시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전수교육 및 공연활동을 하기가 무리임을 밝힘 ○ 보유 종목에 대한 기억능력 및 구술을 통한 전수교육 활동은 가능하겠으나 실제 몸을 써야 하는 예능 종목의 특성상 온전히 그 전수활동을 지속 가능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B	○ 현지조사 시 보유자의 건강 상태는 썩 좋지 않았음. 주로 집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의 외출 정도가 가능할 정도였음. 근래 낙상으로 인해 거동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본인도 이제는 탈춤을 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함
C	○ 현지조사 시 보유자 자신이 인정받은 예능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음. 김실자 보유자는 근래에 낙상으로 인해 거동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말까지 덧붙임. ○ 김실자 보유자가 자신의 예능을 공연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모니터링 주요내용

- 2010년 : 장구를 실연하여 보유 기예능을 실연하지 않음.
- 2011년 : 공개행사에 불참
- 2012년 : 공개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만 지킴.

(5) 예고사항(관보 제17932호/2013.1.17/문화재청 공고 제2013-13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34호 강령탈춤	명예보유자	김실자 (金實子)	여	1928.12.28.	둘째양반, 마부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양2차(아) 20-106

- 인정예고 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김실자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임.

(6)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김실자를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3.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3.1.11.)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이양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3.1.17~)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 지정일 : 1971. 1. 8.
-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이양교(가사, '75.7.12 인정)
 - 전수교육조교(3명) : 김호성(가사, '87.1.5 선정)
황규남(가사, '89.12.1 선정)
이준아(가사, '08.12.30 선정)

(2) 확인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이양교
- 일시 : 2012. 12. 7.
- 장소 : 보유자 자택(서울 은평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3) 조사결과

조사자	검토의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보유자 제도에 대해 이양교 보유자는 자신이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 정신이 명료하고 가사에 대한 음악적 이해가 현재 활동하는 젊은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젊은 사람을 보유자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실제 가사의 가창능력을 전승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됨. ○ 성대의 노화현상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있어 목소리가 갈라지고 거친 소리가 났으며,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의 구사가 원활하지 못하였음. 청력의 노화현상이 있어서 조금 큰 소리로 질문을 해야 들을 수 있었음.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령으로 극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공개행사에 참여하여 보유자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하지 않다고 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교의 건강은 연세에 비해 그리 나쁘지는 않아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지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음. 시범적인 시조나 가사의 가창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연로하여 세밀한 가락의 표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쉽게 노래할 수 있는 가락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음.

(4)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모니터링 주요내용

- 2010년 : 보유자가 연로하여 보유자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함
- 2011년 : 공개행사 불참. 보유자가 리허설까지 마쳤으나 고령으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급히 자택으로 이송됨
- 2012년 : 공개행사에 일부 참여(평시조)

(5) 예고사항(관보 제17932호/2013.1.17/문화재청 공고 제2013-13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1호 가사	명예보유자	이양교 (李良敎)	남	1928.8.28.	가사	서울 은평구 응암3동 402-161 성운빌라 401호

○ 인정예고 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이양교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임.

(6)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이양교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4.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3.1.11.)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이매방을 명예보유
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3.1.17~)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승무>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 지 정 일 : 1969. 7. 4.
- 전승자현황
 - 보유자(3명) : 이애주(승무, '96.12.31 인정)
정재만(승무, '00.12.14 인정)
이매방(승무, '87.7.1 인정)
 - 전수교육조교(3명) : 임규홍(승무, '92.7.1 선정)
김정수(승무, '98.6.5 선정)
김묘선(승무, '05.4.20 선정)

<살풀이춤>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 지 정 일 : 1990.10.10.
-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이매방(살풀이춤, '90.10.10 인정)
 - 전수교육조교(5명) : 정명숙(살풀이춤, '93.8.2 선정)

김정녀(살풀이춤, '94.7.1 선정)
 김정수(살풀이춤, '01.10.18 선정)
 양길순(살풀이춤, '93.8.2 선정)
 김운선(살풀이춤, '93.8.2 선정)

(2) 확인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이매방('27년생, 남)
- 일 시 : 2013. 1. 8.
- 장 소 : 보유자 자택(서울 서초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3) 조사결과

조사자	검토의견
A	○ 2012년 11월 목포 행사 이후 앞으로의 공연 행사 및 활동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사료됨.
B	○ 지난해 낙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전수교육은 말씀으로는 가능하나 실연을 통한 전수교육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과거 허리불편으로 완판 공연을 못하고 처음부분만 실연했으나 이제는 휠체어에 의존하므로 전승공연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C	○ 공개행사 때 공연을 직접 실기할 수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지 방문에서도 혼자 거동할 수 없음을 확인함. 현재의 건강상 더 이상 공개행사를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전수교육활동은 보존회를 중심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유자 개인의 건강상 스스로 보유 예능을 전수하기에는 어려움.

(4)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모니터링 주요내용

- 2010년 : 80대 고령으로 실연의 한계가 있음
- 2011년 : 고령으로 완판을 하지 못하고, 전반부만 출연. 명예보유자로 추대되어야 한다고 봄
- 2012년 : 보유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만 하고 퇴장. 보유자의 승무와 살풀이 예능을 영상물(1분 50초)로 대체

(5) 예고사항(관보 제17932호/2013.1.17/문화재청 공고 제2013-13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명예보유자	이매방 (李梅芳)	남	1927.5.5.	승무 및 살풀이춤	서울 서초구 양재동 389-3 정원빌리지 305호

○ 인정예고 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이매방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임.

(6)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이매방을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5.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3.1.11.)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3.1.17~)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 지정일 : 1988.12. 1.
-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강선영(태평무, '88.12.1 인정)
 - 전수교육조교(3명) : 이현자(태평무, '93.8.2 선정)
이명자(태평무, '94.4.1 선정)
양성옥(태평무, '96.5.1 선정)

(2) 확인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강선영
- 일 시 : 2013. 1. 8.
- 장 소 : 보유자 자택(서울 성북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3) 조사결과

조사자	검토의견
A	○ 합리적인 언어구사에 비해 거동이 불편하여 매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신체거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전수교육을 전혀 할수 없다 사료됨. ○ 말씀으로는 매사가 귀찮아서 공식석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나 걷는 것 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여 공개행사 참여는 어렵다고 사료됨.
B	○ 강선영 보유자 자택 방문시 가족들의 부축으로 거실에서 면담한 결과 거동이 불편하여 전수교육에서 말씀으로 지도는 가능하나 실연을 통한 전수교육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역시 낙상으로 인한 다리 불편으로 독자적으로 걷기가 불편한 관계로 공연활동은 불가하다고 봄. 고령에다 하지 불편으로 예능 발표는 어렵다고 판단됨.
C	○ 실기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 현지조사 결과 혼자 거동이 불가능함. 따라서 공연 실연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여겨짐. ○ 전수교육 활동에 있어 실기를 직접 전수할 수 없다고 판단됨. 거동의 불편으로 앉아서 지켜보며 동작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동작의 직접 지도는 불가능함.

(4)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모니터링 미실시

- ※ 담당공무원 현장조사('12.7)시, 강선영은 고령 및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됨
- 4년 전 고관절 수술 후에 거동 불가를 확인함.

(5) 예고사항(관보 제17932호/2013.1.17/문화재청 공고 제2013-13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2호 태평무	명예보유자	강선영 (姜善泳)	여	1925.3.30.	태평무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110 한주빌라 302호

- 인정예고 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임.

(6)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강선영을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6.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고법 분야 보유자 인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3.1.11)에서 중요무형
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분야의 전수교육조교 신영희, 고법 분야의 전수
교육조교 김청만을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
(2013.1.17~)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 지정일 : 1964.12.24
- 전승자 현황
 - 보유자(6명) : 남봉화(수궁가, '12. 4. 6 인정),
성판례(춘향가, '02. 2. 5 인정),
성창순(심청가, '91. 5. 1 인정),
박정자(홍보가, '02. 2. 5 인정),
송순섭(적벽가, '02. 2. 5 인정),
정철호(고법, '96. 9.10 인정)
 - 전수교육조교(16명) : 김영자(수궁가, '91. 5. 1 선정),
정영미(수궁가, '95. 8. 1 선정),
정옥향(수궁가, '01.12.27 선정)
조동규(수궁가, '88. 8. 1 선정),
신영희(춘향가, '92. 7. 1 선정),
박봉례(춘향가, '85. 3. 1 선정),
김수연(춘향가, '07. 3.12 선정),
이순자(심청가, '95. 8. 1 선정),

강정자(적벽가, '93. 8. 2 선정),
 김양숙(적벽가, '94. 4. 1 선정),
 김일구(적벽가, '92. 7. 1 선정),
 박시양(고법, '01.12.27 선정),
 박정철(고법, '08.12.30 선정),
 김청만(고법, '91.11. 1 선정),
 정회천(고법, '85. 7. 1 선정),
 장덕화(고법, '92. 7. 1 선정)

(2) 추진경과

- 2012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 수립에 관소리 반영('12.1월)
- 2012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에서 관소리 홍보가 분야 보유자 충원 조사 대상 검토('12.3.30)
 - 검토사유 : 홍보가 분야 보유자 충원 조사 대상인 전수교육조교가 없으므로 충원 조사 대상 범위 검토 필요
 - 검토결과 : 이수증을 발급받고 10년 이상 전승활동을 이수자로 함.
- 홍보가 분야 보유자 인정 자료보고서 접수('12.5월)
- 관소리 보유자 인정 조사 불참 확인서 제출('12.4~10월)
- 기량평가 실시
 - 일시/장소 : 2012.12.10, 12.12 /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 조사자 : 관계전문가 7명
 - 조사대상자

분야	조사대상자
춘향가 (2명)	신영희('92.7.1 전수교육조교 선정) 김수연('07.3.12 전수교육조교 선정)
홍보가 (8명)	강선례('88.11.30 이수) 김영소('89.11.30 이수) 임향임('90.12.31 이수) 이란초('91.10.1 이수) 채수정('93.7.31 이수) 김영옥('94.10.17 이수) 전인삼('94.10.20 이수) 마인화('95.6.15 이수)
고법 (2명)	김청만('91.11.1 전수교육조교 선정) 정회천('85.7.1 전수교육조교 선정)

(3) 예고사항(관보 제17932호/2013.1.17/문화재청 공고 제2013-13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申英姬)	여	1942.2.6.	춘향가	서울 송파구 방이1동 한양3차(아) 2동 1005호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김청만 (金淸滿)	남	1946.4.16.	고법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347-8

○ 인정예고 사유

- 신영희는 판소리 춘향가 분야에 대한 전승능력 및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분야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김청만은 판소리 고법 분야에 대한 전승능력 및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분야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4)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를 다음과 같이 인정함.
 - 춘향가 : 신영희
 - 고법 : 김청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7.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인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3.1.11)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인정 예고자의 이수 심사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이의제기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의제기자의 사실 확인서 제출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 지정일 : 1969. 9. 27.
- 전승자 현황
 - 보유자(3명) : 이춘목(관산용마·수심가, '01.11.30 인정)
김광숙(관산용마·수심가, '01.11.30 인정)
이은관(배뱅이굿, '84.10.15 인정)
 - 전수교육조교(3명) : 유춘심(관산용마·수심가, '95.8.1 선정)
박준영(배뱅이굿, '96.2.1 선정)
김경배(배뱅이굿, '01.3.21 선정)

(2) 추진경과

- 2012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 조사 계획에 포함('12.1월)
- 기량평가 실시
 - 일시/장소 : 2012.10.30(화) /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 조사자 : 관계전문가 4명
 - 조사대상자(2명) : 배뱅이굿 분야 전수교육조교 박준영, 김경배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 기량평가 실연곡목 : 배뱅이굿 전체로 함(40분 이내)

(3) 예고사항(관보 제17895호/2012.11.23/문화재청 공고 제2012-293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인정	김경배 (金敬培)	남	1959.12.13.	배뱅이굿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144

○ 인정예고 사유 : 김경배는 서도소리 배뱅이굿 분야에 대한 전승기량 등 전승능력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분야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4) 예고결과 : 이의제기 있음

(5) 인정 예고자 소명자료 제출

(6) 이의 제기자 사실 확인서 제출

라. 검토의견

○ 이의제기 및 사실 확인서 제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김경배를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 기예능 : 배뱅이굿
-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전수교육조교 경력은 조사항목에 반영되어 평가되었음
 - 이수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
 - 조사 및 심의 시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0명, 제척 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8.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2012.10.12)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전수교육조교 김각한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2.10.24~)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 지정일 : 1996. 11. 01.
-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오옥진(각자 / '96.11. 1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김각한(각자 / '05. 4. 20 선정)

(2) 추진경과

- 2012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포함(2012. 1.17)
- 2012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에서 조사위원 추천 심의('12. 3.30)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2. 5.4)
- 현지조사 실시('12. 6.22)
- 보유자 인정 예고('12.10.24 ~)

(3) 현지조사 개요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 : 김각한(현 전수교육조교)
- 일시/장소 : 2012. 6. 22 /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0-12 학림빌딩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 조사제외 항목 : 전승기량의 실기능력 기술재현능력 중 ‘건설도’와 ‘협업의 적정성’ 항목

(4) 예고사항(관보 제17873호/2012.10.24/문화재청 공고 제2012-273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능	주소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인정	김각한 (金閣漢)	남	1957.10.23	각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0-12 학림빌딩

- 인정예고 사유
 - 김각한은 각자장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결과 : 이의제기 있음

라. 의결사항

- 김각한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로 인정함
-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 문화재청 감사 결과, 나무의 수령 및 선별, 현판 제작에서 김각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보유자 인정에 무리가 없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의 보유자로 인정되어 해당 전수교육조교가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 지정일 : 1973.11.5.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김인식(범패, '05.11.15 인정)
 - 전수교육조교(5명) : 마명찬(범패, '95.8.1 선정)
이수길(범패, '98.2.25 선정)
이병우(지화, '05.9.23 선정)
이조원(범패, '05.9.23 선정)
한희자(작법무, '05.9.23 선정)
 - 보유단체 : 영산재보존회('87.11.11 인정)

(2)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 보고 접수(2013.2.1.)
 - 지정명칭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
 - 보유자 : 이조원(남, 1946.8.21일생)
 - 인정일 : 2013.1.3.
- 보존회에 문서 발송(문화재청→영산재보존회)

- 영산재보존회 전수교육조교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2013.2.5)
- 해당 전수교육조교의 보존회 내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적 제출 요청
- 해당 전수교육조교 사퇴서 제출(2013.2.12)
- 보존회 의견제출
 - 해당 전수교육조교(이조원)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적 제출(2013.2.14)
 - 전수교육조교 사퇴처리 요청(2013.2.13)

라. 검토의견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해당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함.

마. 의결사항

- 이조원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에서 해제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10.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심사종목 및 공동등재 신청 종목 선정

가. 제안사항

201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심사종목 및 공동등재 신청 종목 선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심사종목 및 공동등재 신청종목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의하는 것임.
- 아울러, 공동등재의 경우 등재 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국내 전승공동체 범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1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회의(2011.1.14)
 - 2012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심사종목 및 공동등재 신청종목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의하는 것임.
- 2011년 9월 2일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2011.9.2)
 - 2012년도 심사대상 종목의 명칭을 일부 조정
 - 정선아리랑→아리랑, 가야금산조→가야금산조 및 병창
 - 심사대상 종목 및 추천 순위 결정
 - ①아리랑 ②풍물놀이 ③가야금산조 및 병창 ④대금·피리 정악 ⑤갯일
- 2011년 10월 14일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2011.10.14)
 - 2013년도 심사 대상 종목은 다음과 같이 함
 - 미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 종목을 확대토록 함
 - 김치, 연등회, 탈놀이
 - * 기 신청종목인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대상을 확대하여 탈놀리로 함

- 2013년도 인류무형유산 심사 우선순위 제출(무형문화재과→국제교류과)
(2012.8.17)
 - 김치와 김장문화
- (2) 단독등재 심사 대상 종목 선정
 - 선정배경 : 2011년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제5차, 제6차 회의 결과 선정되었던 6개 대상 종목들 가운데 2014년도 심사 대상 종목 선정
 - 대상종목(6개) : 풍물놀이, 가야금산조 및 병창, 대금·피리정악, 갯일, 연등회, 탈놀이
- (3) 공동등재 심사 대상 종목 선정 (* 국제교류과 협조)
 - 추진배경
 - 인류무형유산 심사 총량이 제한된 가운데, 국가 간 공동등재는 우선순위를 두어 심사함
 - 다국가 공동등재는 물적·인적 재원 확보가 수반되는 작업으로, 공동등재 주도국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임
 - 대상종목 : 줄다리기
 - 국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줄다리기는 제26호 영산줄다리기와 제75호 기지시 줄다리가 있음. 또한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 중국 등에서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줄다리가 전승되고 있어 공동등재 추진에 적합
 - 추진전략
 - 공동등재를 위해서는 ① 해당유산의 다른 국가 전승여부, ② 등재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 ③ 등재이후 공동등재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등이 중요함
 - 이에, 대상종목 지자체 공모 및 지자체별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대상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경과
 - 2012. 4월 지자체를 통한 등재 종목 공모
 - 줄다리기(당진시), 탈놀이(안동시) 제출
 - 2012. 6월 줄다리기 공동등재 국내회의

- 2012. 9월 동남아시아 줄다리기 공동등재 사전협의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
- 2012. 10월 줄다리기 공동등재 관계기관 협의
 - 문화재청(국제교류과,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연구실), 아태무형유산센터, 당진시
- 2012. 12월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원안가결(공동등재 대상종목으로 선정)

(4) 공동등재 시 국내 전승공동체 범위 검토

○ 줄다리기 관련 무형문화재 현황(국가 2, 시도 4)

구분	종목명	보존회	지정일자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영산줄다리기보존회	1969.2.11.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사줄다리기	기지사줄다리기보존회	1982.6.1.
시도 지정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호 삼척기줄다리기	삼척기줄다리기보존회	1971.11.16.
시도 지정	경남무형문화재 제7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민속예술보존회	1983.8.6.
시도 지정	경남무형문화재 제20호 의령큰줄맹기기	의령큰줄맹기기보존회	1997.1.30.
시도 지정	경남무형문화재 제26호 남해선구줄끗기	남해선구줄끗기보존회	2003.6.12.

○ 지정 무형문화재 이외의 줄다리기 전승현황

구분	명칭	내용
스포츠줄다리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줄다리기연합회	·스포츠줄다리기 보급 ·공인줄다리기 심판원과 지도자 양성 등 ·아시아줄다리기선수권대회 개최 등
지역축제 민속줄다리기	영광외줄다리기(전남 영광)	·범성포단오제 시 연행
	입석줄다리기(전북 김제)	·‘입석’만 시도민속문화재로 지정 ·정월대보름 행사로 진행
	영월취줄다리기(강원 영월)	·단종문화제(1967년~) 시 연행 ·금년 도지정무형문화재 신청 예정
	여주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 (경기 여주)	·여주 관내 여강고등학교에 지원 하여 지역축제 시 연행 -쌀·고구마축제(11월), 군민의날(9월)

라. 검토의견

- 단독등재 심사 대상 및 공동등재 신청 대상 종목은 국내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 공동등재 심사 대상 종목의 경우 등재 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국내 전승 공동체 범위 설정이 필요함.
 - 현재 국내 줄다리기 전승실태는 지정무형문화재와 비지정무형문화재로 구분되는데,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생활체육으로서의 스포츠줄다리기와 지역축제에서 진행되는 민속놀이로서의 줄다리가 있음.
 -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는 국내 전승공동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만 줄다리기 관련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공동체 포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회의에서 검토할 필요성 있음.

마. 의결사항

-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심사종목은 ‘풍물놀이’로 함.
 - 추후 ‘해녀문화’를 포함하여 단독등재 신청 종목을 검토토록 함.
-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신청 종목 및 전승공동체 범위를 다음과 같이함.
 - 공동등재 : 줄다리기
 - 추후 ‘탈놀이’를 포함하여 공동등재 신청 종목을 검토토록 함.
 - 전승공동체 범위 : 줄다리기 관련 국가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포함하며, 그 이외의 줄다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서 검토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11. 2012년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 선정

가. 제안사항

‘2012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 선정 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9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2012.5~12월/한국민속학회), 그 결과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현행 법령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여 향후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등을 위한 예비목록으로 활용
- 관련 규정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109호/2012.4.17)

제2조(정의)①이 규정에서 “국가목록”이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2.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무형문화재
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

②이 규정에서 “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①문화재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①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조사개요

- 사업수행자 : (사)한국민속학회(대표 : 정형호)
- 참여연구단(8명) : 정형호(총괄, 선정기준, 놀이), 장장식(구비문학), 최공호(공예), 허용호(공연예술, 무속), 강정원(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행사), 김재호(자연,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주영하(음식), 이경엽(구전전통 및 표현)
- 사업기간 : 2012.5.9~12.8
- 소요예산 : 48,675천원(연구개발비)

(3) 조사결과

- 항목 선정 기준
 -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적 전통성 속에서 독자적으로 전승된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하되, 민족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항목을 우선 선정.
 - 항목의 선정은 현재 공동체 속에서 전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승이 약화, 소멸된 대상 중에 근래 복원 및 재현되고 있는 것은 항목 선정에 포함.
 -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시대적 상황에서 소멸되거나 전승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항목 선정에 우선함.
- 분류별 선정 목록 : 총 50개
 - 구전 전통 및 표현 : 내방가사
 - 사회적 관습, 신앙의식과 축제
 - 사회적 관습 : 격구, 화전놀이, 두레멕이, 송계, 초분, 활쏘기놀이, 명태덕장, 소싸움, 노점상, 사시랭이

- 신앙의식과 축제 : 노들제, 관제묘, 개천대제, 산맥이, 동해안오구굿, 서울재수굿, 제주 수산리 본향당 신앙, 삼척지역 단오굿, 산릉제향, 동해안여서낭제, 남원춘향제, 지화만들기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약초채취, 솥굽기, 탐신앙, 폐백음식 만들기, 논호미제초기술, 건모기술, 뒷도구수리기술, 골갈이, 기우제, 비빔밥 조리, 산나물 채취와 조리, 사찰음식의 조리, 무속음식의 상차림, 종가음식의 상차림, 순창고추장 만들기, 메밀국수 만들기, 돌살, 삭힌 홍어 제조, 도깨비굿
- 공연 예술 : 전주대사습, 여성농악, 여성국극
- 전통공예기술 : 혁필화, 전통도검 제작, 상여제작, 옷칠채취, 섭패기술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붙임 : 2012년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안) 1부

[붙임]

2012년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안)

번호	항목명	분류(유네스코 기준)
1	종가음식의 상차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2	내방가사	구전전통 및 표현
3	돌살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4	상여제작	전통공예, 기술
5	지화 만들기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6	사찰음식의 조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7	남원춘향제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8	초분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9	순창고추장 만들기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10	두레맥이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11	약초 채취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12	격구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13	혁필	전통공예, 기술
14	화전놀이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15	동해안여서낭제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16	개천대제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17	노들제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18	관제묘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19	사시랭이	#사회적 관습 · 의식 및 축제 행사
20	산맥이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21	옷칠제작	전통공예, 기술
22	섬패기술	전통공예, 기술
23	숯 굽기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24	전통도검 제작	전통공예, 기술
25	동해안오구굿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26	제주도 수산리 본향당 신앙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27	삼척 지역 단오굿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28	서울재수굿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29	송계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30	탑신앙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31	노점상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32	활쏘기놀이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33	명태덕장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34	산릉제향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35	폐백음식 만들기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36	뒷도구수리기술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37	논호미제초기술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38	건모기술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39	소싸움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40	골갈이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41	기우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42	산나물 채취와 조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43	비빔밥 조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44	무속음식의 상차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45	메밀국수 만들기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46	전주대사습	공연예술
47	도깨비굿	자연, 우주에 대한 관습과 지식
48	여성국극	공연예술
49	삭힌 홍어 제조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50	여성농악	공연예술

12.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지정 협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살풀이춤’의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서울특별시에서 ‘살풀이춤’에 관한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추진 중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 지정일 : 1990.10.10.
-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이매방(살풀이춤, '90.10.10 인정)
 - 전수교육조교(5명) : 정명숙(살풀이춤, '93.8.2 선정)
김정녀(살풀이춤, '94.7.1 선정)
김정수(살풀이춤, '01.10.18 선정)
양길순(살풀이춤, '93.8.2 선정)
김운선(살풀이춤, '93.8.2 선정)

(2)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개요

- 지정명칭 : 살풀이춤
- 인정대상 보유자(1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은주	여	1955.10.18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및 필요성
 - 한영숙 춤의 꽃은 살풀이춤으로 종목지정의 필요성이 있고 신청인은 20여 년간 한영숙류 살풀이춤을 추어온 사람으로 충분한 기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심의 예고하기로 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2012.10.8.)>

※ 진행경과

- 2011.6.21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보류)
 - 전통춤이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종목지정을 할 필요성은 있으나
 - 한영숙 춤 보존회 등 관련 단체간 정통성 진부 논란이 있으므로 신청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대표성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함
- 2011.12.21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검토
- 2012. 7.11 공연 실사
 - 실연장소 : 서강대학교 메리홀
 - 실사위원 : 4명(경임순 위원, 최종민 위원, 이희병 前경기도문화재위원, 김말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라. 검토의견

- 대상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와 중복되지 않음

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이견 없음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대상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춤 보유자와 중복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3-02-013

1.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김희진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12. 9.13 신청)가 접수됨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 지정일 : 1968.12.21.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김희진('76. 6.30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김혜순('89.12. 1 선정)

(2) 확인조사 개요

- 기 간 : 2012. 9.13.(목)
- 장 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보유자 자택
- 확인자 : 여성희 사무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조사대상자 : 김희진

(3) 확인결과

- 김희진 기능보유자는 거동이 가능하나 고령으로 인하여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전환하여 후진 양성을 원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4) 우리 청 검토의견

-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자의 연령을 감안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의결사항

- 김희진을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2.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3.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가. 제안사항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2012.5.18)에서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의결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종목 : 수륙재(水陸齋)

○ 신청자

(가) 백운사 아랫넛수륙재보존회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결과(2007.11.9)

· 심의결과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천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불모산 영산재」 보유자

(나)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대표 : 김종민(원명))

- 설립연월일 : 2009.3.31

-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결과(2011.1)

· 심의결과 : 중요무형문화재로 신청

(다) 진관사 수륙재 보존회(대표 : 진관사 주지 계호)

- 설립연월일 : 1977년 (진관사 운영위원회)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결과(2011.9.20)

· 심의결과 : 중요무형문화재로 신청 진달하기로 함. 다만, 예능 보유자 확보 노력이 필요함

(2) 추진경과

- 진관사 수록재 지정신청 ('04.3.30)
 - 검토결과 : 부결
 - 부결사유 : 불교의식으로 영산재가 지정되어 범패, 작법 등이 행해지고 있고 영산재보존회에서 수록재와 생전예수재를 거행하고 있으므로 추가 지정의 필요성은 없음
- 수록재 지정 신규 및 재신청
 - 마산 백운사('07.11.2), 동해 삼화사('11.1.28), 서울 진관사('11.11.6)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서면조사 실시(2011.8월)
- 수록재 종목 지정 관련 이의신청 민원('12.3.20)
- 수록재의 고유성 및 영산재와의 차별성에 대한 사찰별 소명자료 접수('12.5월)

사찰	수록재와 영산재의 차별성	타 사찰 수록재와의 차별성
진관사	현행 수록재와 현행 영산재 의식 절차의 해당 항목만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세밀하게 의식절차를 살펴보면 첫 의식 절차인 '시련'의 성격과 단을 설치하는 방식 등이 다름. 오히려 진관사 수록재는 49재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음.	진관사 수록재는 조선시대 서울·경기지역의 유일한 '국행(國行) 수록재'이자 왕실 천도재임. 진관사 수록재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른 사찰의 수록재와 달리 <영산작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과거의 전통을 온전하게 계승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큼.
삼화사	수록재와 영산재는 의례의 정의, 의례문의 내용, 의식의 절차, 작법과 수인, 설단과 장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임	미제출
백운사	수록재, 영산재, 시왕각배재, 생전예수재, 상주권공재는 모두 영혼을 천도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하고, 내용이 어려운 계송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 대상 신과 영혼이 달라지면서 설치하는 단의 종류와 절차에 차이가 나게 됨. 또한 수록재는 영산재에 비해서 그 역사적 연원이 깊다고 할 수 있음.	경상도 범패는 타 지역 소리와 다르며, 불모산(佛母山)범패의 계보를 잇고 있음. 이 지역 수록재는 복원·재현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온 문화재임. 수록재의 특성상 봉행 주체가 사찰이 아니라 소리를 하는 승려(어장)이기 때문에 초빙하는 승려에 따라 그 재의 내용과 특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

- 2012년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12.5.18)

-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함.

(3) 현지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8명
- 조사대상 :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사, 마산 백운사
- 조사일시/장소 : 2012.10.13~10.14/서울 진관사 및 마산 백운사
2012.10.19~10.21/동해 삼화사
- 조사자 검토의견 (요약)

조사자	검 토 의 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화사) 역사적으로 조선초기 실록기록 및 1607년 판각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수륙재의 의례문 가운데 가장 원형에 가깝게 재현되고 있음. 비록 전승단체의 역사는 짧으나 지역과 신도의 관심·참여도가 높고 전승의지가 강함. 핵심인력인 외채비를 삼화사 자체에서 육성하지 못하고 서울 조계종어산학교 승단을 초빙하였다는 점이 한계임 ○(진관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영인본과 번역본, 『진관사국행수륙대재』 등의 발간과 세미나 개최 등의 노력이 돋보임. 그러나 봉원사 승단을 외채비로 초빙한다는 점에서 봉원사 영산재와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할 것인지는 의문임. 시설면에서는 장소가 다소 협소했음 ○(백운사) 역사적 민속학적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존회측에서 주장하는 지속 연원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수륙재어산집』이라고 하는 문헌 역시 판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음. 또한 경상남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불모산영산재와 범패·작법에 있어 차이가 없음. 의식 실행에 있어서는 무속적 색채가 강한데 민속학적 연구가치가 있으나 불교 악가무로서의 품위를 느끼기에는 적절치 못하였다고 생각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화사) 조선전기로부터 문헌적 근거가 있고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라는 의례문도 전하고 있어 전통성이 인정됨. 의식절차가 충실하게 시행되었으며 연간 1개월간의 설단·장엄교육의 효과가 재상배치, 지화, 장엄 등에서 탁월하게 나타났음. 대외적으로는 동해시의 협찬을 받아 팜플렛, 포스터, 홍보 DVD 등을 제작 배포하였음 ○(진관사) 설단과 장엄이 단아하였음.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스님들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의 축제적 느낌은 희박함. ○(백운사) 불모산영산재와 별 차이가 없었음. 장엄과 지화제작에는

	관심이 적었음. 주지스님 중심으로 전승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음.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화사) 삼화사 수록재의 최대 약점은 역사성임. 또 강원도의 지역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한국문화에 대한 대표성은 갖는다고 보며 의식 숙련도와 지역의 관심도도 훌륭함. ○(진관사) 나름의 역사적 근거가 있는 의례로서 시련과 대령을 거쳐 관육을 실시한 다음 다시 관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특징도 가지고 있음. 수행에 있어서는 범패승들의 기량이 뛰어나며 장엄, 지화 등 진관사의 역량이 우수함. 진관사수록재학교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점도 강점이나, 아직은 어산을 외부에 거의 의존하고 있음 ○(백운사) 정체성이 대단히 모호하며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최근의 수록재는 석봉 스님 개인의 역량에 의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요소가 많음.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화사) 국행수록재보존회와 신도들의 높은 관심과 조직도가 최대 장점임 ○(진관사) 나름의 문헌을 조사했다고는 하나 여러 종류의 문헌에 의거 점차 수정되어 왔음. 수록재 의식은 삼단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낮재·밤재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등 탄탄한 편임. 다만 설행 면에서 어산단과 삼현육각, 일부 승려들의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됨. 시설과 장비는 탁월함 ○(백운사) 조사 대상 세 사찰 중에서 백운사의 음악적 정체성은 다소 의심스럽다. 역사적 근거도 미비하고 의례와 음악은 상당부분 창작 및 개작한 것으로 생각되어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설행면에서도 범패를 만들어서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었음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화사) 조선시대 역불정책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례집이 남아 있다는 것은 수록재 설행에 직결되는 근거임. 삼화사 수록재는 동해시 등 지역사회의 지원이 강점이며, 보존회 회원 구성도 우수함 ○(진관사) 자체 유지가 어려운 대규모 의식인 점을 고려하면 잘 보존된 편이며 역사적 근거도 있음. 진관사 수록사터 발굴이 이루어지면 조선시대 수록재 모습의 복원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진관사의 주체적 전승 의지는 높으나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기간이 짧으므로 향후 운영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010년경 바깥채비 인원이 바뀐 점은 핵심요소인 어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백운사) 서울 중심 범패인 경산조와는 달리 영남조(통범소리, 팔공산재, 통고소리 등 경상도 중심 범패)로 통고소리의 맥을 잇는 경상도 범패의 고유성을 갖고 있음. 의례 기물에서도 서남부 경남의 지역적 특성이 있어 한국전통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자료적 가치가 있음. 시설 면에서는 아랫녘수록재전수회관이라는

	전승을 위한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화사) 삼화사 수록재에는 문헌자료적 근거가 있으나, 현재 수록재와의 연관성은 좀더 연구될 필요가 있음. 수록재 의례는 두 타산 권역의 고유성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16세기의 『천지명양 수록재의찬요』는 다년간 세미나 및 논문의 연구주제가 되고 있어 한국문화연구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설행면에서는 숙련된 신도들 참여가 두드러진 점이 강점임. 또한 삼화사불교대학 및 종목별 단체에서 신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해시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발전이 기대됨 ○(진관사) 구한말의 기록이 남아 있으나 수록재로서의 성격을 지녔는지 단순 천도재인지 알 수 없음. 또한 복원과정에서 영산재 기능보유자들의 기여도가 큰 점은 영산재와 진관사 수록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향후 조선시대 왕실수록재로서의 성격을 잘 발굴해 간다면 발전 가능성이 큼 ○(백운사) 다소 논의가 필요하나 영남지역에서 민간화된 수록재로서의 고유성은 인정되나, 주도자인 석봉스님의 이력으로 불 때 불모산영산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임. 석봉 스님을 중심으로 한 범패승들의 기량은 훌륭하였으나, 이것이 어떠한 전통에 기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음. 또 백운사는 시설면에서의 한계가 지적되며, 인적 기반도 좁다고 할 수 있음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화사) 고유성과 강원도 지역 불교의식 문화로서의 대표성이 강함. 설행자들의 의식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나 지속성은 부족함 ○(진관사) 특징적 요소가 명확하지는 않은 편이나 연행자들의 숙련도가 높고 범패와 작법의 수준이 높음 ○(백운사) 수록재를 봉행해 온 기간이 짧고 역사적 근거의 신뢰도가 낮음. 한국을 대표하는 수준의 내용과 성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전승주체인 주지의 전승의지는 높으나 연행자 집단의 전승의지가 반영된 외형적 효과는 우수하지 못함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화사)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 자체의 문헌적 신뢰성은 높으나 이를 전승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현재의 의례는 복원되어 가는 중으로 보임. 삼화사 수록재의 고유성은 ‘국행’이라는 점에 있는데 그 고유성의 실체가 모호함. 의식 설행에 있어서는 장중한 표현이 돋보이며 법안, 인오, 해담스님의 예능 숙련도도 높은 편임. ○(진관사) 조선시대 수록재 전통은 지속되지 않았음. 문헌근거 자체의 신뢰도는 높으나 그것이 현행의 무형문화 양상의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함. 타 수록재에 비해 신중작법, 영산작법,

	<p>수륙연기 등의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 낮재와 밤재의 이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어 진관사만의 고유성이 있음. 이미 수 종의 연구성과들이 나와 있어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도 입증되어 있음. 단체운영 측면에서는 수록재보존회가 2010년 사단법인화되었으며 보존회 부설 수록재학교를 통해 단체내 전승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음</p> <p>○(백운사) 석봉스님 중심의 보존회가 전승활동을 한 역사는 길지 않으며 그 역사성과 계보에 대하여 모호한 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백운사 아랫녘 수록재는 역동적인 범패의 가락과 작법을 표현적 특징으로 하는데 영남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백운사 아랫녘 수록재의 연행과 전승주체가 불모산 영산재의 연행·전승주체와 거의 동일함. 실행의 경우 비교적 절차가 정확하게 구현되었지만, 소도구와 장엄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음</p>
--	---

○ 수록재와 영산재의 차별성에 대한 조사자 의견 (요약)

조사자	검 토 의 견
A	<p>○ 불교의례에서의 악가무는 단순한 예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이 중요함. 수록재는 국행이나 왕실 주도의 대규모 법회이므로 영산재와 수록재가 각자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와 예술인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임. 또 영산재로 인해서 수록재의 외채비 인력이 갖추어짐은 앞으로 영산재와 수록재가 공존해야 함을 보여줌. 영산재와 수록재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문적 예술적 창출이 기대됨</p>
C	<p>○ 영산재와 수록재는 음악적 요소인 범패와 작법무, 전반부 구성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음</p> <p>○ 그러나 차이점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영산재는 천도재 성격을 기반으로 18세기에 나타났으나 수록재는 조선전기에 낮재·밤재의 합설 형태로 나타났음. 그 의례단계에 있어서 수록재에는 사자단과 오로단이 있어서 영산재와는 명확하게 구분됨</p> <p>○ 수록재가 지정된다고 하여 영산재의 지정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님</p>
D	<p>○ 수록재는 지속성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와는 잘 맞지 않음. 오히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 성격이 맞을 것으로 생각됨</p> <p>○ 수록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혼천도 불교의식이므로 독자성이 있는 의례임. 그러나 의식 구성을 분석해 보면, 영산재와 전혀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는 아님</p>
F	<p>○ 영산재는 개인의 작복과 천도기능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수</p>

	<p>륙재는 공동체의 통합 기능에 목적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의례의 정의, 의례문의 내용, 의식의 절차, 작법과 수인, 설단과 장엄 등에서 각각 의례의 성격과 기능에 따른 차이점을 가짐.</p>
H	<p>○ 영산재와 수록재는 전승 주체 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종목 차원에서는 변별됨. 수록재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고향을 위해 베푸는 재이기에, 영산재와는 달리 오로단과 사자단이 덧붙여 꾸며진다는 차이점이 있음. 그래서 전승주체가 같다 하더라도 수록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p>

(4) 참고사항 : 관련 종목 지정 현황

(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제50호 영산재(1973.11.5. 범패지정, 1987.11.11 명칭변경)

- 보유자(1명) : 김인식('05.11.15 인정/범패)
- 전수교육조교(5명) : 마명찬('95.8.1 선정/범패)
이수길('98.2.25 선정/범패)
이병우('05.9.23 선정/지화)
이조원('05.9.23 선정/범패)
한희자('05.9.23 선정/작법무)

(나)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93.4.20지정)
-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0-가호 범패와 작법무(바라춤)('02.2.4지정)
-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와 작법무(나비춤)('02.2.4지정)
-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수록재('04.4.6지정)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작법('88.11.27지정)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불모산 영산재('02.2.14지정)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수록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하고,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 지정 명칭은 수록재로 하며, 세부 지정명칭을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보유단체 명칭은 다음과 같이 권고함.

1. 삼화사 수록재

· 보유단체 : 삼화사국행수록재보존회

2. 진관사 수록재

· 보유단체 : 진관사국행수록재보존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0명, 제척 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4.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 기능 검증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의 전통기능 보유 여부 검증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주철장 기록화도서 관련 청원(2011.11.18) 등 주철장 보유자의 전통기능 보유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2년 2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주철장 보유자 기능 시연(2012. 8.27.~10.10, 45일간)을 진행하였음.
- 주철장 시연 참관인 검토의견, 재료 분석 및 완성종 음파측정 결과, 시연 영상기록물 열람 후 이의제기 등 주철장 보유자 기능 시연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보유자의 전통기능 보유 여부를 재 확인하고자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주철장 보유자 시연검증 개요

- 기간 : 2012. 8.27(월)~10.10(수) * 45일간
- 장소 : 진천 주철장 전수교육관 및 성중사
* 용광로 이용문제로 성중사(보유자 소유 공장)에서 일부 진행
- 시연내용 : 기록화도서를 기준으로 ‘선림원지중’ 제작 시연
- 기록화도서의 오류사항(웹세트 사용 등)을 보완하여 시연

(2) 추진경과

- 기록화도서 관련 청원(‘11.11.18)
- 주철장 기능시연 검증여부 결정(‘12. 2.22)
- 보유자, 이의제기자의 추천을 받아 자문단 구성하여 검증방법 논의
- 주철장 기능시연 검증 참관단 구성(‘12. 7.20)
- 보유자, 이의제기자, 문화재청 참관단 각 2인 추천(‘12.7.4)
- 자문단 구성에 대한 보유자와 이의제기자간 이견 발생, 참관단 중 일부 불참(‘12.8.30부터) * 참관인 추천 및 참관 재개 협조요청(8.30/9.18/10.8)

- 재료·결과물 분석 및 영상기록물 열람('12.10~'13.2)
 - 시연 주재료 및 시연 완성종 등을 전문분석기관에 의뢰·분석
 - 시연 완성종 자문위원 참관 및 음파측정 실시('13.1.10)
 - 시연 영상기록물 열람 및 완성종 확인(이의제기자, 자문위원 등 / '13. 2. 5)
- 이의제기자 영상기록물 열람 검토의견 제출요청('13.2.5/2.15)
- 이의제기자 검토의견 접수('13.2.25)

(3) 시연검증 결과

- 기록화도서에 기록된 재료와 공정(웹세트 등 일부공정 보완)으로 시연 진행, 결과물로 선림원지종 완성·보관(국립문화재연구소)



- 종소리 음파측정 결과
 - 분석기관 : 강원대학교 기계메카트로닉스 공학과
 - 분석결과 : 선림원복원종과 유사한 크기의 다른 한국종과 비교할 때, 높은 고유 진동수 성분을 가지며, 잡음없이 맑고 깨끗한 음색을 보임.

○ 재료분석 결과

- 결과 : 기록화도서에 기록된 재료만 사용함(웹세트 등 화학물질 사용안함)

분석재료	분석기관	분석방법	분석결과
이암	한국세라믹기술원	기기분석	이암으로 판단됨
모래	한국세라믹기술원	습식·기기·무게분석	모래로 판단됨
점토	한국세라믹기술원	습식·기기·무게분석	점토로 판단됨
거푸집	한국세라믹기술원	습식·기기·무게분석	웹세트 등 화학물질 미검출
종 분체	한국세라믹기술원	습식·기기·무게분석	웹세트 등 화학물질 미검출
밀랍	국립문화재연구소	적외선분광분석	밀랍의 적외선스펙트럼이 있음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물성분석	밀랍의 물리적특성이 있음
	서울대 공동기기원	탄소동위원소분석	식물기원물질로 판단은 어려움 (밀랍을 식물기원물질로 가정)

○ 시연 검증 참관인 검토의견 요약

구 분	검토의견 요약
보유자측 참관인	○ 밀납사용기술, 밀납조각방법, 주물사 비율, 자경성수지 주물사 사용 문제, 거푸집 열처리과정, 거푸집 해체시 세라믹 몰드의 셀 발견 문제 등 주철장 기록화도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연 검증을 통하여 의문점 해소.
이의제기자측 참관인 (영상기록 확인후 이의제기)	○ 시연과정 영상기록을 통하여 확인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 시연 영상기록 열람후 이의제기 및 검토의견 참조
문화재청 참관인	○ 제기된 이의 내용 중 일부-밀납사용 기술 및 조각 방법은 재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음. 물론 보유자의 주철장 기능 모두가 우리의 순수한 전통기술인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움. ○ 주철장의 기록도서 내용이 부실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재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기록한 영상물을 토대로 추후 보완되어야 함. ○ 이미 사라진 전통기술의 회복을 위한 연구가 매우 치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시연과정 영상기록 열람 후 이의제기 및 검토의견

이의제기자	이의내용 요약	검토의견
000 000 000 000	○ 문화재청 추천 참관인 중 1인이 보유자와의 트러블로 인하여 도중에 참관 중지, 이에 대한 해명 요구	○ 참관인 중 1인이 참관일에 2시간 늦게 도착, 기 진행된 과정을 다시 할 것을 요청. 이미 지난 공정이므로 기록된 영상물을 열람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이후 참관공정에 불참하였음. *추후 참관 안내시 불참의사 확인 ○ 나머지 참관인 1인이 계속 참가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
	○ 기록화도서의 내용대로 이암에 조각해서 밀랍모형을 해야 하는데, 비천상 하나만을 수행하고 이암 조각은 시늬만 하였음.	○ 이암에 의한 밀랍조각은 주철장 지정조사 보고서의 지정 기능이 아님. ○ 기록도서에 기재된 이암조각들에 의한 밀랍모형의 섬세한 조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암조각들로 비천상 밀랍모형 제작 과정 시연 -이암으로 종문양의 일부분(비천상)을 조각하여 밀랍모형을 본 떼었으나, 실제 종 제작에 쓰인 밀랍모형은 석고조각들을 사용하였음.
	○ 완성된 범종의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주물사의 은백색 색깔로 보아 현대적 구조에 사용되는 세라믹이나 지르콘 주물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주물사 고착물인 거푸집에 대한 분석결과, 펄셋트, 지르콘 등의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음.
	○ 동영상에서 주물사 배합시에 사용된 주물사 및 배합액에 대한 샘플채취와 성분 검사결과 요청	○ 주물사에 쓰인 이암, 모래, 점토는 샘플채취 후 성분분석 결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되었고, 배합액은 영상기록물에서 수돗물로 확인됨.

라. 우리 청 검토의견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 '주철장'의 내용 중 '밀랍주조기술', '밀랍조각방법', '주물사 재료', '펄셋트 사용' 등 기능 실연의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하여 시연과정의 실시간 영상기록, 시료의 과학적 분석, 완성종의 음과 측정, 참관인의 현지참관(이의제기측, 보유자측, 문화재청) 등을 통하여 실연 내용을 검증·확인하였음
- 다만, 종 문양의 밀랍조각방법에 대해서는 '주철장' 지정조사 보고서의 지정 기능이 아니지만, 기록도서에 기재된 이암조각들에 의한 밀랍모형

의 섬세한 조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암 조각틀로 비천상 밀랍모형 제작 과정을 시연하였으나, 실제 종제작에 사용된 밀랍모형은 석고조각틀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음.

- 상기 검증절차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의제기 사항은 보유자가 실연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되었으며, 향후 시연 영상기록, 검증 결과에 의한 기록도서 보완·수정 필요

마. 의결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의 기능 검증 결과, 해당 보유자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시연 영상 기록 및 검증 결과에 따라 기록영상 및 기록도서를 보완·수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3-02-017

1.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총원 조사 관련 소위원회 결과

가. 제안사항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총원계획 관련 조사자 추천 건에 대한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3.1.11)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총원조사를 위한 조사위원 추천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목별 조사위원 추천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검토기간 : 2013.2.13~2.15)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 경위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사위원 위촉 대상자 파악을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단체로부터 관계전문가 명단 제공을 의뢰(2012.12.31.)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 검토(2013.1.11.)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목별 조사위원 추천을 검토토록 함

(2) 소위원회 개요

- 검토안건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총원조사 관련 조사자 추천
 - 검토사유 :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3.1.11.)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총원조사를 위한 조사위원 추천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목별 조사위원 추천을 검

도하기로 함.

- 검토방법 : 서면 검토
- 소위원회 위원 구성 : 임돈희, 김말애, 나선화, 박진태, 최태현, 황루시
- 검토기간 : 2013. 2. 13. ~ 2. 15.

(3) 소위원회 결과

-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자로 추천함
- 각 분야별 조사자를 추가로 추천함
- 추천된 조사자 중에서 제척여부를 확인하여 조사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접수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